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2. 1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1. 1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3. 11. 20.

다. 상정일자: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3. 11. 29.)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가. 제안이유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탄소 저감에 기여하며,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내방객 등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화 (안 제3조제1항)
- 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 부설주차장 출입 통제 (안 제3조제2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O 입법예고: 2023. 10. 12. ~ 11. 2. (제출의견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가.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탄소 저감에 기여하며,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 내방객 등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개정 내용

- O 안 제3조제1항에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며 유료화하는 내용임.
- 안 제3조제2항에 주차질서 확립과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 통제하거 나 개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 개정내용은 청사 부설주차장은 공공업무와 민원행정처리시다수의 구민과 민원인이 방문하는 곳으로 주차공간이 늘 부족한점을 볼때, 24시 연중 유료로 하는 점에서는 야간시간대 주차차량 감소와 주변 행사가 있을 경우 주차를 하고 외부일정을 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고, 국가 혹은 자치단체의 영조물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부과되는 사용료의 경우는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주변 거주 주민이 야간무료개방에 익숙한 점을 감안하면 조례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이용 변경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져 청사 주변 구민들의 불편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 청사방문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 도모를 위해 청사 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기준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없 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 8. 기 타: 없 음